

울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156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1566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단1072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강성수, 이운대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김윤섭

변론종결 2024. 7. 18.

판결선고 2024. 9. 5.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단10726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50,500,000원 및 2024. 7. 10.부터 2024. 9. 10.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10일 1,500,000원씩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0원 및 2024. 7. 10.부터 2027. 6. 10.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10일 1,500,000원씩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5,051,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제1심에서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제1심공동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E의 배우자로서 피고의 계모이다.

나. E은 2008. 6. 1.부터 2020. 9. 30.까지 피고 운영의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2020. 11. 12. H 퇴직연금으로 해당 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34,488,338원을 지급받은 다음, 2020. 11. 19. 피고에게 위 퇴직금 중 34,48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도 2013. 11. 1.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2020. 11. 19. H 퇴직연금으로부터 해당 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48,557,702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역시 피고에게 위 퇴직금 전액을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의 동생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도 그 무렵 퇴직금 21,453,858원을 받아 피고에게 위 퇴직금을 송금하였다.

다. E은 2021. 3. 17. 사망하였고(이하 E을 '망인'이라 부른다), 그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피고, F, G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 10. 1,500,000원, 2021. 7. 12. 2,000,000원, 2021. 8. 10. 1,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2호증(일부)(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망인이 2020. 11. 19. 피고에게 수령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추후 이를 반환할 것을 전제로 대여해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금 상당의 대여금 48,557,702원과 원고가 상속받은 망인의 퇴직금 상당의 대여금 34,48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해당하는 11,493,333원을 더한 60,051,035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21. 4. 17. 원고에게 위 금원을 일시에 변제하는 대신, 원고가 사망하는 날까지 매월 10일 1,5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실제 2021. 6. 10.부터 같은 해 8. 10.까지 합계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21. 6. 10.부터 2024. 6. 10.까지 매월 10일에 발생한 약정금 55,500,000원(= 37개월 × 1,500,000원)에서 피고가 2021. 6. 10.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지급한 5,000,000원을 뺀 나머지 5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2024. 7. 10.부터 매월 10일에 1,500,0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로부터 향후 3년에 한정하여 2027. 6. 10.까지 매월 10일에 1,500,000원씩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망인이 2020. 11. 19. 피고에게 수령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 망인 등을 포함한 가족들 사이에 퇴직금을 피고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원고와 망인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주장과 같이 지급받은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도의적으로 계모인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을 뿐, 사망하는 날까지 매월 1,500,000원씩 지급한다고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나. 원고와 망인이 퇴직금을 받아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의 성격

앞서 인정되는 사실, 갑 제8,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러한 사실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이 퇴직금을 받아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고의 사업 운영자금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반환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1) 원고가 2020. 11. 19. 피고에게 H 퇴직연금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48,557,702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였던 망인 역시 H 퇴직연금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중 34,480,000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F은 “2020년 자금부족으로 기업의 생사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아버지(고 E)는 2020년 9월 말경 가족 모두를 불러 모아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회사로 쥐서 회사경영에 쓰게 하자고 하십니다”라는 내용의 사실 진위여부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와 망인을 포함하여 ‘D’에서 근무하였던 가족들이 각자 자신들의 퇴직금을 ‘D’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를 중재한 F은 망인이 사망한 직후인 2021. 4. 1. 원고에게 전화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계속 월 1,5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이 더 낫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F 역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F과의 위 2021. 4. 1.자 통화 이후인 2021. 4. 17. 피고와 F을 직접 만나 피고에게 퇴직금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F이 ‘D이 망하게 되면 나 역시 퇴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F 역시 자신이 피고에게 준 퇴직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말하였던 점, ③ 같은 증거에 의하면, F이 ‘(공장이) 실질적으로 엮어지면 제일 타격 큰 거는 내야, 나도 나 퇴직금 하나도 없어, 지금’이라고 말하자, 원고가 2021. 4. 17. F에게 ‘F씨는 20,000,000원 받아갔잖아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F이 ‘나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F은 피고에게 주었던 퇴직금 상당의 금원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나마 되돌려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작성한 위 사실 진위여부 확인서 중 “퇴직금을 회사로 줘서 회사경영에 쓰게 하자”는 기재만으로는, 퇴직금 상당 금원을 자원으로 하여 회사경영을 지원하자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지원의 성격이 대여, 증여, 출자 등 상정할 수 있는 여러 원인관계 중에서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4. 17. 피고에게 ‘나랑 내 영감 퇴직금’, ‘E씨 퇴직금, 내 퇴직금’, ‘80,000,000원 상당의 돈’을 지급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현재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어렵다. F으로부터 달달이 얼마씩 준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매월 1,5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망인이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요구에 대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오히려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함을 전제로 원고와 그 지급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4. 4. 17. 피고에게 ‘나랑 내 영감 퇴직금’, ‘E씨 퇴직금, 내 퇴직금’, ‘80,000,000원 상당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현재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어렵다. F으로부터 달달이 얼마씩 준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 10. 1,500,000원, 2021. 7. 12. 2,000,000원, 2021. 8. 10. 1,500,000원을 각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원고가 상속받은 망인의 대여권 채권 지분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매월 10일 1,5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매월 1,500,000원의 지급의 종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사망하는 날까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1. 4. 1. 원고에게 원고 사망시까지의 정기금 지급에 관하여 발언한 사람은 F이지 피고는 아니었던 사실, 원고가 2021. 4. 17. 피고를 직접 만나 했던 대화 중에 피고가 금원의 지급기한을 원고의 사망시까지로 하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발언을 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사망시까지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원고가 사망하는 날까지 매월 1,5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와 망인의 퇴직금 상당의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체결된 것이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제안에 원고는 ‘그럼 뭐 이렇게 합시다. 월 이거, 이거 저거 합하니까, 한 팔천 되데? 팔천 좀 넘대? 이거를 나누기 몇 개월 해 갖고, 그 금액을 공증을 딱 근저당 잡고 그 금액 다 들어오면 내가 근저당 풀어주는 공증을 딱 써줄게, 땡 그러면 깔끔하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역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상당의 대여금만큼만 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피고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금원 60,051,035원[= 원고의 퇴직금 상당 대여금 48,557,702원 + (망인 퇴직금 상당 대여금 34,480,000원 × 원고의 상속 지분 1/3, 원 미만 버림)]을 상한으로 하여 매월 10일 1,5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위 약정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한 양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도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명목이 무엇이 되었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021. 6. 10.부터 2024. 6. 10.까지 매월 10일에 발생한 약정금 55,500,000원(= 37개월 × 1,500,000원)에서 피고가 2021. 6. 10.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지급한 5,000,000원을 제외한 5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2024. 7. 10.부터, 앞서 본 60,051,035원을 상한으로 할 때 1,500,000원의 마지막 지급기한이 되는 2024. 9. 10.까지 매월 10일 1,500,0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망인이 2020. 11. 19. 피고에게 수령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추후 이를 반환할 것을 전제로 대여해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금 상당의 대여금 48,557,702원과 원고가 상속받은 망인의 퇴직금 상당의 대여금 34,48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해당하는 11,493,333원을 더한 60,051,035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21. 6. 10.부터 같은 해 8. 10.까지 합계 5,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55,051,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보듯이 원고와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상당의 금원에 관한 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위 가항의 정기금 약정 채무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일부가 인용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박성규, 판사 설정은